

# 대학 내 및 주변 1인가구 밀집지역 안전을 위한 교육부·경찰청·한국대학교육협의회·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업무협약서

교육부, 경찰청, 한국대학교육협의회,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(이하 “협약 기관”이라 한다)는 대학가 주변 범죄 예방을 위한 상호 긴밀하고 우호적인 협력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여,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.

**제1조(목적)** 이 협약은 협약 기관이 대학가 주변 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협력내용)** 협약 기관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협력한다.

1. 경찰·대학 합동 범죄예방진단 활성화
2. 범죄예방 환경설계(CPTED) 공동 추진
3. 대학가 주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경찰서·대학·지자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‘대학가 공동체치안 협의체’ 구성
4. 기타 대학가 주변 범죄 예방을 위한 협력사항
  - △ 대학생 순찰대 구성 △ 대학 내 범죄예방교육 등

**제3조(협약의 이행)** ① 협약 기관은 제2조 사항들을 실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며, 추진사항 공유 및 상호 협의를 위해 정기적으로 소통의 장을 마련한다.

② 협력 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은 상호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.

제4조(자료의 공유) 협약 기관은 제2조에서 정한 협력내용과 관련하여 상호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,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 협조한다.

제5조(비밀유지) 협약 기관은 협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본 협약의 목적 외 사용하거나 상대 기관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협약의 종료 이후에도 같다.

제6조(협약의 변경·해지) 이 협약의 변경·해지에 관한 사항은 실무 논의를 통해 협약 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.

제7조(협약의 효력) 이 협약서의 효력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2년간 유효하며, 상호 이의가 없는 경우 1년씩 자동 연장된다.

협약 기관은 협약서 4부를 각각 서명하여 기관별로 1부씩 보관한다.

2019년 9월 4일



부총리 유 은 혜	청장 민 갑 룡	회장 김 헌 영	회장 이 기 우
<u>유은혜</u>	<u>민갑룡</u>	<u>김헌영</u>	<u>이기우</u>